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하며,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제공시간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토	07:30~18:00	공휴일 제공

4.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2023.01.01 시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3.01.01 시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화개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 항목	비용
중식비(1회/일)	2,400
석식비(1회/일)	2,400
간식비(2회/일)	1,100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가.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제공계획을 안내 받을 권리가 있다.
- 나.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다.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라.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마.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수급자에 관한 병력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1.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어르신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 영위불가 상황 발생 시
4.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